

「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9월 8일, 이창열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10월 13일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장려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(안 제6조의3제1항)
- 기관 · 단체 등 사무 위탁,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사항
(안 제6조의3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유진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첨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9. 8.
- 회부일자 : 2025. 10. 13.
- 상정일자 : 2025. 10. 13.

2. 제안이유

-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장려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(안 제6조의3제1항)
- 기관·단체 등 사무 위탁,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사항
(안 제6조의3제2항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,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8조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전반에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고취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6조의3(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)에서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시책 추진,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긍정적 가치관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,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 및 인구문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, 입법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불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.

1. (생 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~ 차. (생 략)
3. ~ 7. (생 략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8조(혼인과 출산)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

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470
----------	-----

발의 연월일 : 2025년 9월 8일

발의자 이창열 의원

찬성자 김성기, 심현정, 이은미 의원

1. 제안이유

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장려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가.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(안 제6조의3제1항)

나. 기관·단체 등 사무 위탁,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사항
(안 제6조의3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5. 4. 18. ~ 4. 25.(의회사무과-1710), 의견없음

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) 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결혼장려사업
2.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
3.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·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6조의3 (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)</u> 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결혼장려사업 2.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.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<p>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·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

[관계법령]

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6조의3(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) 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결혼장려사업
2.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
3.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·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4